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5

2023. 10. 1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9. 27. 안지연 의원 대표발의(10명 공동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0. 16.)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안지연 의원)

여성우선주차장은 여성의 안전한 주차장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거나 여성 대상 범죄의 빌미가 되기도 하여 그 설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오늘날 주차장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주차장 이용 배려 대상을 성별에 국한하기보다는 영유아나 노약자 등을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바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규정하여 이동약자의 이용 편의 제고 및 배려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에 관한 사항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변경함(안 제11조의3 및 별표 7).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문성)

1 조례안의 취지

- 동 개정조례안은 이용대상을 여성으로 국한한 ‘여성우선주차장’의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임산부 또는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이들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도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음.

2 세부내용 검토

가.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관련 검토(안 제11조의 3)

- 현행 「주차장법」 제6조제2항1)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강남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 제11조3²⁾에서 ‘주차대수 규모(기계

- 1)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 설비기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이라 한다)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 '여성우선주차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여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도입·운영되었으며, 강남구는 2013년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우선주차장 제도를 채택하였음.
- 2023년 9월 말 기준 강남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은 총 43개소, 1,528면(전체 구획면의 약 28.4%)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민간 주차장(대형매장, 백화점 내 주차장 등)의 여성우선주차구획 현황을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더 많이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강남구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세부 현황

－ 공영주차장(39개소, 1,473면)

전체 주차장수	설치대상 공영주차장	총 주차면수(A)	설치대상 주차구획 수 (B=A*10%)	現 여성우선 주차구획 수
54개소	39개소	5,120	512	1,473

－ 공공부설주차장(4개소, 55면)

전체 주차장수	설치대상 공영주차장	총 주차면수(A)	설치대상 주차구획 수 (B=A*10%)	現 여성우선 주차구획 수
4개소	4개소	262	26	55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3(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 참고로 여성우선주차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³⁾과 달리 이용대상자가 아닌 운전자가 여성우선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어 과태료 부과 등의 별도 제재를 받지 않음

나. 필요성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우선주차장’의 이용 대상을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까지 확대하며 그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임
- 지난 2022년 8월 서울시는 0~9세 자녀를 둔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 주고, 아기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 종합계획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⁴⁾’를 발표하면서 2009년 ‘여성행복프로젝트’를 통해 도입한 ‘여성우선주차장’을 주차장 안전성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가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여 23년 7월부터 본격 조성하고 있음.
-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⁵⁾은 국내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0.626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2021년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788만명 중 약 13.7%인 107만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⁶⁾로 나타나는 등 저출산 지속 및 빠른 고령화 속도에 대비하여 여성만이 아닌 다양한 교통약자⁷⁾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제27조(과태료)

4)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2022.08.) : 양육자 행복에 초점 맞춘 서울시 최초 종합계획
- 4대 분야(안심돌봄·편한외출·건강힐링·일생활균형) 28개 사업, 5년간 14조 7천억 투입

5) 합계출산율 통계(Total fertility rate)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전국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시	제주 특별 자치도	경기도
2021년	0.808	0.626	0.728	0.785	0.778	0.896	0.810	0.940	1.277	0.951	0.853

※ 합계출산율 정의: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6) 서울시 운전면허 소지자(연령별) 통계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서울열린데이터광장)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계	7,712,062명	7,758,060명	7,810,868명	7,864,542명	7,882,536명
65세 이상	775,106명 (10.1%)	847,014명 (10.9%)	912,500명 (11.7%)	1,001,483명 (12.7%)	1,079,907명 (13.7%)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결론

- 위 검토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여성우선주차장’의 경우 이용대상(여성)을 상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나 ‘가족배려주차장’의 경우 가족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족인지 확인 여부가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을 보임.
- 다만 2023년 3월 언론보도⁸⁾에 따르면 ‘여성우선주차장(여성안심주차장)’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약 53.6%가 ‘여성 및 교통약자 모두를 배려하는 주차장으로 개편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는 점⁹⁾에서 집행부가 홍보와 계도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조례안의 취지가 관내 시민사회에 실효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문화뉴스(2023.03.13.) : 명칭 바뀌는 여성우선주차장 제각기 다른 인식 “성차별 조장”이라는 인식도..

< 리얼서치코리아 설문조사 결과 >

- 응답자수 : 4,352명(95% 신뢰수준, 허용오차 $\pm 1.4\%$)

- 조사기간 : 2023.2.22.~2.26. - 조사방법 : 앱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9) 같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8.5%는 ‘실제 운전자 확인이 어려우므로 결국 아무나 주차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라며 우려의 반응을 보였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5
----------	-----

발의연월일: 2023. 9. 27.

발 의 자: 안지연·복진경·노애자·김진경·
이도희·이향숙·김광심·
강을석·황영각·오온누리의원
(이상10인)

1. 제안이유

여성우선주차장은 여성의 안전한 주차장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거나 여성 대상 범죄의 빌미가 되기도 하여 그 설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오늘날 주차장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주차장 이용 배려 대상을 성별에 국한하기보다는 영유아나 노약자 등을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바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규정하여 이동약자의 이용 편의 제고 및 배려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에 관한 사항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변경함(안 제11조의3 및 별표 7).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의 제목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우선주차장의”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7에 따른다.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 호에서 “이동약자”라 한다) 또는 이동약자를 동반한 사람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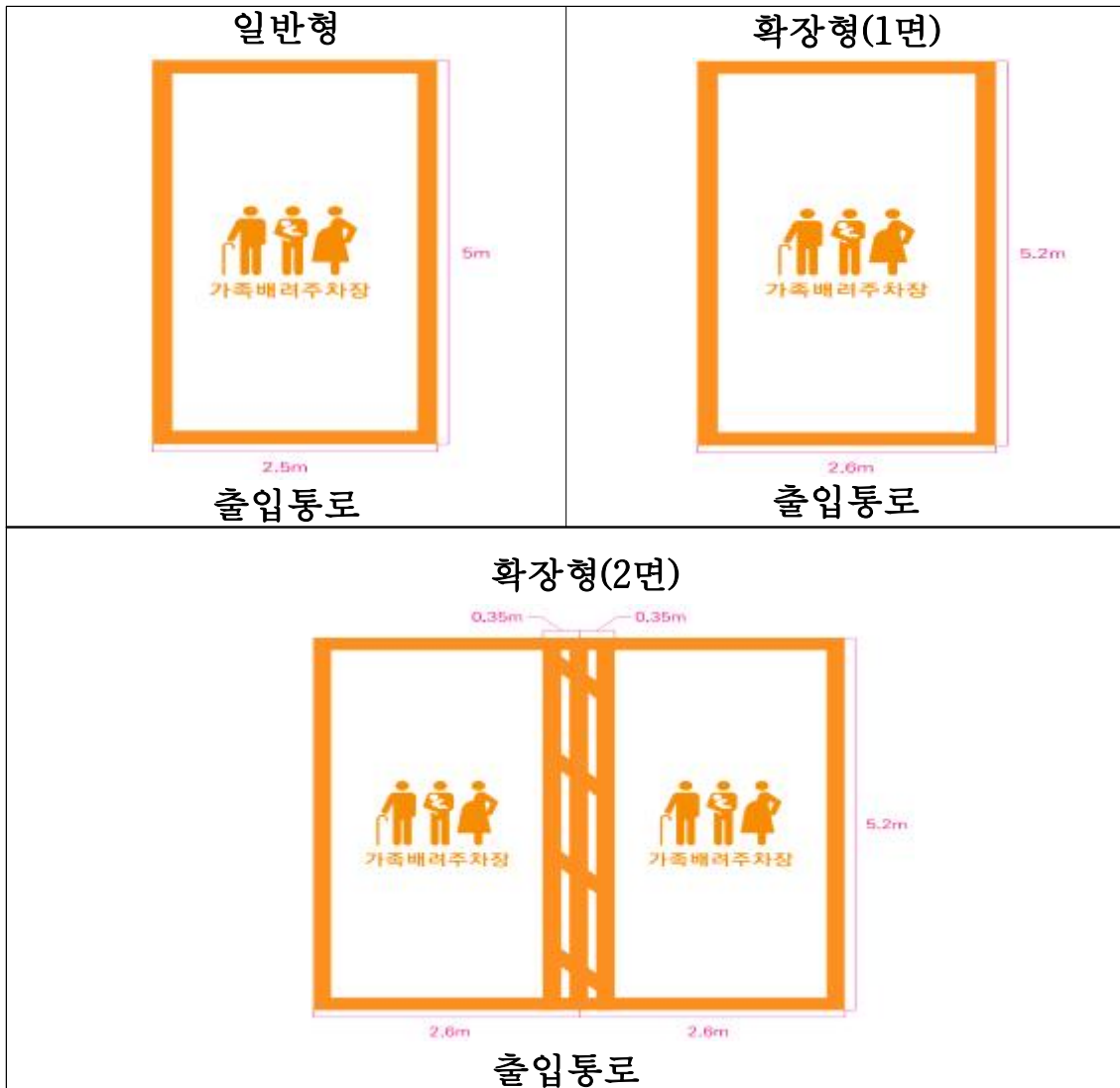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

[별표 7]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11조의3제4항 관련)



- 비 고 -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 [가로 2.6m 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 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 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 주차장 환경에 따라 그 규격과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u>여성우선주차장 주차 구획의 설치기준 등</u>) ① 법 제6 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 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 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퍼센트 이상을 <u>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u> (이하 “ <u>여성 우선주차장 주차구획</u> ”이라 한 다)으로 한다.	제11조의3(<u>가족배려주차장 주차 구획의 설치기준 등</u>) ① ----- ----- ----- ----- ----- <u>가족배려주차 장 주차구획</u> ----- ----- -----.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 하는 <u>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u> 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 차구획으로 한다.	② ----- ----- --- <u>가족배려주차장</u> ----- ----- -----.
③ <u>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u> 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 야 한다.	③ <u>가족배려주차장</u>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u>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 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u>	④ <u>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7에 따른다.</u>

형으로 구분하여 별표 7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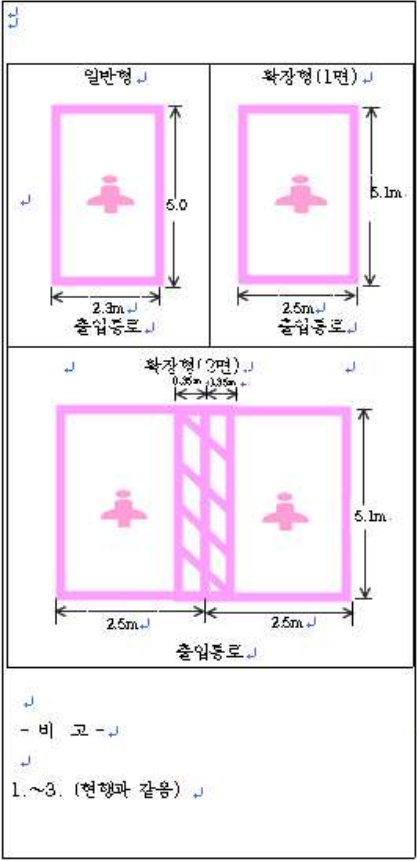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
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
호에서 “이동약자”라 한다)
또는 이동약자를 동반한 사람

신 · 구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7]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11조의 3제4항관련)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11조의3제4항 관련)  - 비 고 - 1. ~3. (현행과 같음)	[별표 7]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11조의 3제4항관련) 일반형  출입통로 확장형(1면)  출입통로 확장형(2면)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 [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 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 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 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2. 주차장 환경에 따라 그 규격과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	--